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金炳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043

발의연월일 : 2022. 12. 21.

발 의 자: 金炳旭・강대식・김학용

노용호 • 박성민 • 백종헌

성일종 • 이명수 • 이인선

정운천 의원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 피해 복구 지원과 관련하여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고, 농업·어업·임업 ·염생산업(鹽生産業)이 주 생계수단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피해 복 구를 위한 지원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에 기록적인 폭우로 인하여 건설기계 및 화물자동차 등이 침수되어 수많은 운송업자들이 피해를 입고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으나, 이러한 피해에 대해서는 융자와 같은 간접적인 지원만 규정되어 있어, 막대한 수리비 부담 등으로 일을 재개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

이에 재난 피해 복구 지원 내용에 건설기계나 화물자동차에 피해를 입은 경우 수리비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여 지원 범위를 보다 확대하 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제7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3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주 생계수단인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 물자동차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기계 또는 차량에 대한 수 리비 지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계 및 화물자동차 피해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3항
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재난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
조 등의 지원) ①・② (생 략)	조 등의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	3
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	
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	
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	
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	
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	
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	
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u><신 설></u>	7의2. 주 생계수단인 「건설기
	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건설기계 또는 「화
	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

	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기계 또는 차량 대한 수리비
	<u>지원</u>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